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성주군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 부서별 개별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명칭·용어·인용조문 등 변경에 따른 정비 (안 제1조～제8조)

: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외 7개 조례

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안 제9조～제10조)

: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외 1개 조례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인용 정비 (안 제11조～제20조)

: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 9개 조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
○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7. 9.21. ～ 2017.10.11.)

성주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성주군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 성주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지명위원회조례”를 “성주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명위원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성주군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3조(「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제2조제11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를 “「농업협동조합법」 및”으로 한다.

제5조(「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를 “성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7조(「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자연재난·인적재난”을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하며, “성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을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연·인적”을 “자연·사회”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재난대책기간
제4조제4항 및 제6항 중 “자연·인적재난”을 각각 “자연·사회재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연·인적재난”을 “자연·사회재난”으로 한다.
제7조 중 “자연·인적재난”을 “자연·사회재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단서 중 “자연·인적재난”을 각각 “자연·사회재난”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중 “자연·인적재난”을 각각 “자연·사회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연·인적재난발생시”를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를 “자연·사회재난상황관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을 “(자연 및 사회재난상황 보고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인적”을 “자연·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관계중앙부처”를 “행정안전부·관계중앙부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제10조(「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질환자
제11조제2항 중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의 개정)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개정)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의 개정)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철도청장과”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로 한다.
제19조(「성주군 건축조례」의 개정)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을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를 “성주군 농어촌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농업기반공사”를 “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구역”을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농어촌공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군 본청의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건설기술 진흥법」----------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성주군지명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지명위원회조례	성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성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3. ~ 5. (생 략)	제5조(지원대상) ----------. 1. ---------- 법 제2조제10호----------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① (현행과 같음) ②----------「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3. ---------- 「농업협동조합법」 및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성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1조(목적)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 ----------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 관리)①·② (생 략)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 관리)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성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자연재난·사회재난 ----------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생 략)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사회재난”----------. 3. (현행과 같음) 4.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 5. ---------- 자연·사회 ---------.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적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① ~ ③ (생 략)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성주군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자연·사회재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성주군 소속 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⑥---------- ---------- ---------- ---------- --------- 자연·사회재난-------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위임전결) ①---------- ---------- -- 자연·사회재난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대비체제) ---------- ---------- 자연·사회재난---------- ---------- ---------- ---------- ---------- ---------- -.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자연·사회재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 ---- 자연·사회재난----------.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①·② (생 략)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①·② (현행과 같음)
③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③------ 자연·사회재난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성주군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자연·사회재난 ----------.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성주군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⑤자연·사회재난발생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성주군지구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자연·사회재난상황관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 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사회재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자연 및 사회재난상황 보고요령) ---------- 자연·사회 ----------.
1. 보고시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10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나. ---------- 사회재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① (생략)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생 략)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 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2. ---------- 행정안전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① (생 략)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① (현행과 같음)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 ----------.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행정안전부·관계중앙부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 ----------.

○ 성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① ~ ③ (생 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 9. (생 략)	제2조(정의) ----------. 1. ---------- 장애인용 ----------. 2. ~ 9.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원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신이상자 3. ~ 6. (생 략) 제11조(편의시설 등)① (생 략) ②제1항 각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 1. (현행과 같음) 2. 정신질환자 3. ~ 6. (현행과 같음) 제11조(편의시설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②(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 행정안전부 ----------.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행정안전부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 행정안전부 ----------.

○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4. ---------- 행정안전부 ----------.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 행정안전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생 략)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생 략)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고용정책 기본법」---------- 5. (현행과 같음)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북도지사 및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2조(상황보고) ① ---------- ------ 행정안전부 ----------. ②·③ (현행과 같음)

○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군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② (생 략)	제5조(군세의 수납) ① ---------- 행정안전부----------.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가. ---------- 기획재정부장관----------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생 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금액등) ①기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제4조(융자금액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①·② (생 략)	제13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과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성주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제8조(녹지의 점용허가) ①영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녹지의 점용허가)①----------.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5.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
5. 철도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6. (현행과 같음)
6.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 성주군 건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대지안의 조경)① ~ ③ (생 략)	제26조(대지안의 조경)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	④ ---------- 국토교통부장관----------.

○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성주군 농어촌공사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공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 라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농어촌공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4조(감독기관)①·② (생 략)	제4조(감독기관)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군수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①----------.
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 "농림부"로 표시한다.	1. ---------- "농림축산식품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리계 해산) ①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리계 해산)①----------.
1. 몽리구역이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조성 등 기타사유의 발생으로수리계의 몽리면적이 감소되어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 농어촌공사구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 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업기반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공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